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9-0329115
신청일	2026-09-08 07:00:13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검 "공무원 부패장려"부 주민철, 김진호 아파트 관리비 도둑놈들에게
내용	1. 2026.8.24일 접수된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 고발 사건을(대검 2AA-2608-0942971) 2027.1.1일 처리하겠다고며 질질 끌며 뭉개고 자빠질 계획이더니 2. 8.31일 감사 심사 청구하니까, 9.7일 서부지검에 넘겼더라(처리기간은 2027.1.5일로 연장시키고) 왜? 니들 도둑질이 다른 도둑기관 감사원 등 외부에 유출되는 건 좀 켜기냐? * 아파트 관리비 도둑 조직 ⇒ https://seokgung.com/corrupt9.htm 3. 서부지검 따까리 김은성과 서청원(첨부자료), 그 돌머리들한테 계속 깔고 뭉개라고 시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돌머리 검사년놈 동원할 거냐? 4. 니들이 비호하고 있는 도둑년 트리오 중 하나인 은평구청 이희자가 또 꿈수 부리길래, 한마디 해줬다(첨부자료)
첨부 파일	jojik.png replyhjlee.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9-0420582

접수일	2026-09-09 22:12:26
담당자(연락처)	이장근 (02-3270-4520)
처리에정일	2027-01-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9-21 16:58:0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입니다. 귀하께서 고소하신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번호 1AA-2608-0833501 :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28102호, 주임검사 박현우(02-3270-4431) 신청번호 1AA-2608-0867777 :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28101호, 주임검사 박현우(02-3270-4431) 배당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table><tr><th>질문</th><th>답변</th></tr></table>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한마디 더	
입에 발린 소리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미안하면, 박현우 검사 개한테 전해라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하지 않도록. 1.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28101호(은평 경찰서와 구청의 부당거래)는 (1) 나의 간결 명료한 논리적 설명에 따라, 사실관계 입증하는 서류들 확인하고 (2) 그 관련 범법자들(김현환 서장 새끼와 김미경 구청장년 꼴마니 년놈들) 색출만 하면 된다. 허니, 서대문, 서부 등 경찰 쓰레기통에 이관 시킬 꿈수 부릴 생각하지 말라고 2. 서울서부지검 2026형제28102호(은평구청 이희자 도둑년 지시하에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위반 조사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김영석, 박광식, 전보영, 한명희 등 고소) 사건은 은평경찰 김순옥/김선희 2년한테 8.20일 참고자료로 보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자빠지고 있다.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8192026 위 부당거래 사건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거지 위에 거론된 쌍-년놈들은 모두 [형법] 제151조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질문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답변

이전 답변 보기

답변일	2026-09-17 17:54:1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님.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 수사관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1AA-2608-086777 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 관리 비리 은폐 관련 배임 등의 고소 취지】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에 의하여 서울서부지검 고소사건으로 접수하기 위해 사건과

고소고발 접수 담당자(02-3270-4251)에게 귀하의 민원 자료를 인계하여 드렸습니다.

- 참고로, 귀하의 고소 사건을 접수 처리 후 사건번호와 주임검사가 정하여지면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에서 답변 처리를 하고자 배당되기를 기다렸으나, 서부지검 사건과 고소고발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어 배당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불편하신 점 다소 해소하여 드리고자 이렇게나마 답변을 드리며, 차후 배당이 끝나면 2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 이장근 수사관 (☎ 02-3270-4250)

(우) 042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대검찰청에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본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만족도 결과

질문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질문

답변

한마디 더

검찰이 쓰레기통인 건 틀림없군

쓰레기 검사년놈들은 인사 이동 기간에는 국민세금의 월급 안 받냐?
받아 처먹고 있잖아

그러면, 쓰레기 "재배치"는 재배치고...
재배치 받기 전까지는 받아 처먹고 있는 월급 값은 해야지.
검사 시발-년놈들!
욕이 저절로 나온다